

고시설명문

「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」 일부개정

(2022.12.22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79호)

1. 개정이유

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의 완화 및 신설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정 내 자료보완 및 심사서류 제출의 근거 명문화(제4조, 제6조제3항제1호, 제12조제1항,제3항)
- 나. 장애의 중복조정에 대한 명확화(별표 제1장제5호나목)
- 다. 청력검사의 반복 주기 완화(별표 제2장제2절제2호나목(1),(3))
- 라. 팔·다리의 장애등급 기준 완화,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 신설, 관절 유합술의 조기완치 인정(별표 제2장제4절제1호가목 및 나목(1),(6), 제2호가목 및 나목(1),(6))
- 마. 척추질환 인정범위 확대 및 변형장애 검사방법 등 인정요령 개선(별표 제2장제4절제3호가목 및 나목(1),(3))
- 바. 투석요법의 판정기준 완화(별표 제2장제8절제1호 및 제2호가목(3),(4))
- 사. 악성림프종의 장애 인정요령 개선(별표 제2장제10절제2호나목(3))
- 아. 인공방광 장애등급 신설 및 배뇨장애 기준 명확화(별표 제2장제11절제1호 및 제2호가목(4),(6),(7))